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「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

◇ 제·개정 이유

□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이의제기 기간이 짧아,

-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불복 기회 확대 필요

◇ 주요내용

가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 규정(안 제13조 제5항)

-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

나. 별지 서식(서식 12 과태료처분 통지서)

○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 규정(안 제13조 제5항)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 2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변경